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단2574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유재민, 이동현, 김세은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앤

담당변호사 이창희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에 대하여 2019. 12. 26.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을 17,125,1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125,1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5. C과 사이에 ‘대출금액 30,000,000원, 만기일 2021. 8. 5., 약정이율 8.9%, 연체이율 11.9%’로 정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2019. 12. 26.경 보험계약자 명의를 사촌동생인 피고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은 합계 17,125,14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자 명의가 C에서 피고로 변경될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무자력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기관, E단체, F, G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자 명의변경 당시 C 재산 내역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명의변경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구분	내역	가액(원)
적극재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3,618,063,900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	17,125,146
합계		3,635,189,046
소극재산	이 사건 대출금채무	30,000,000
	H조합에 대한 채무	2,527,971,689
	F에 대한 채무	630,939,179
	E단체에 대한 채무	108,000,000
	I에 대한 채무	60,000,000
	J에 대한 채무	192,400,000
	G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52,052,304
	주식회사 K에 대한 채무	200,000,000
합계		3,801,363,172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공동담보로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은 실제로는 L이 가입하면서 계약자 명의만을 아들인 C으로 해 놓은 것으로 C이 피고에게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자가 C이 아닌 L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서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당시 기준의 해약환급금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C에 대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C은 사해행위 당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에 대하여 체결된 계약자명의 변경에 관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명의변경 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해약환급금은 위 명의변경계약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이므로 위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명의를 C 앞으로 회복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명의변경계약을 당시의 해약환급금 17,125,146원을 한도로 하여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에 대하여 2019. 12. 26.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은 17,125,1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7,125,1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별지1

목록

순번	증권번호	회사 모임계좌	계약일	계약자변경일	종지금액	상환액
1			2012. 9. 25.	2019. 12. 26.	8,861,412원	
2			2014. 12. 30.	2019. 12. 26.	4,511,941원	
3			2016. 10. 14.	2019. 12. 26.	3,751,793원	

별지2

부동산등기기록(소유권) 존재 내역				
조회기준일 : 2019. 12. 26. ~ 현재(2021. 11. 16.) 조회대상자 : [] [], 사실조회신청서 기재주소] 사건번호 : 2021가단257402				
연번	등기부 구분 (폐쇄/현행)	부동산 종류	고유번호	부동산 표시내역
1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임야 15030 ㎡
2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임야 389㎡
3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전 549㎡
4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전 5450㎡
5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묘지 43㎡
6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묘지 119㎡
7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전 364㎡
8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묘지 112㎡

부동산등기기록(소유권) 존재 내역				
조회기준일 : 2019. 12. 26. ~ 현재(2021. 11. 16.) 조회대상자 : [] [], 사실조회신청서 기재주소] 사건번호 : 2021가단257402				
연번	등기부 구분 (폐쇄/현행)	부동산 종류	고유번호	부동산 표시내역
9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전 3664㎡
10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전 721㎡
11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대 64㎡
12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전 244㎡
13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임야 235㎡
14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임야 41㎡
15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임야 233㎡
16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임야 56㎡
17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임야 367㎡
18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 임야 21㎡

부동산등기기록(소유권) 존재 내역				
조회기준일 : 2019. 12. 26. ~ 현재(2021. 11. 16.)				
조회대상자 : , 사실조회신청서 기재주소]				
사건번호 : 2021가단257402				
연번	등기부 구분 (폐쇄/현행)	부동산 종류	고유번호	부동산 표시내역
19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임야 363㎡
20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 184㎡
21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답 10㎡
22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전 330㎡
23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임야 450㎡
24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임야 570㎡
25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임야 85㎡
26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임야 270㎡
27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임야 472㎡
28	현행	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임야 530㎡